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도찬우 소유물건(2024타경47614)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인진

감정평가서번호: GP2024-0823-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평감정평가사사무소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문영

감정평가액	삼억칠천팔백만원정 (₩378,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인진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도찬우 (2024타경4761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9.01	2024.08.29 ~ 2024.09.01	2024.09.02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호	구분건물	1호	-	378,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378,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부동산 “더모스트 에이동 6층 601호”로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 2. 기준가치 및 기준시점

#### (1) 기준가치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은 결정하였습니다.

#### (2)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기간 및 내용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9월 1일로 하였으며 실지조사는 2024년 9월 1일에 임하였습니다.

### 3. 감정평가의 방법

본건 구분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입지조건과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이용 및 관리상태, 위치별·층별 효용도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인근 동류형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평가전례 등을 고려하여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그 밖의 사항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 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일체로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가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본건의 가격을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집합건물 배분비율 및 인근지가상황 등 제요소를 참작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이는 일체의 구분건물의 통상적인 배분비율로서 본건 평가목적의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건의 위치확정과 관련하여 점유위치, 외관표시 및 건축물현황도면을 기준으로 본건의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이용상황 및 내부현황(복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산출

### 1. 시산가액산출 방법

본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출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2. 대상물건의 개요

「출처:집합건축물대장」

소재지	지번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2-6, 1062-7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차로13번길 31		
건물명/ 층/호수	더모스트 에이동/ 6층/601호		용도	오피스텔
건물의 규모	지상6층		사용승인일	2020.07.31
면적(㎡)	전유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전유+공용)	대지권
	51.64	5.28	56.92	24.62

\*공용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주공용부분 면적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시산가액의 산출

### (1)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 1) 인근 거래사례

[자료출처: 감정평가정보체계, 등기부등본]

사례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 면적 (㎡)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건축년도)	비고
가	고촌읍 신곡리 532-**	고촌 헤센스마트	12/*	51.26	319,945,100	2024.05.31. (2023)	-

\*상기 실거래의 구체적인 지번, 동, 호수는 개인정보차원에서 미상처리함.

#### 2) 비교사례의 선정 및 사유

본건과 인근에 위치하며, 규모 등이 유사하여 대상물건과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사례 기호 (가)를 선정하였습니다.

###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사례가액을 정상화 하는 작업으로서, 본건 거래시 제3자인 감정인이 개별적 사정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사례는 실거래신고된 사례로서 인근지역의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등을 감안할 때 정상거래 사례로 판단됩니다.(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시점수정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요지역별 유형별 매매가격지수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도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되,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의 각 직전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 시점 수정치 산출

오피스텔

지역 : 경기도(24.05.31~24.09.01)

거래시점 : 2024.05.31, 2024년04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4.09.01, 2024년08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4년07월 지수를 적용함

2024.05.31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4월) : 99.22

2024.09.01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7월) : 98.70

시점수정치 :  $98.70/99.22 \approx 0.99476$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가치형성요인 비교

구분		격차율		비고
조건	세항목	사례	본건	
단지외부요인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1.00	0.97	본건이 대중교통, 편의시설 및 주요시설과의 접근성 등 제반 단지외부요인이 다소 열세함.
	대중교통의 편의성			
	차량이용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0.97	본건이 신축연도 등 단지내부요인에서 다소 열세함.
	단지내 총세대주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향별 효용	1.00	1.25	본건은 복층구조로서 내부 평면방식 등 호별요인에서 사례보다 우세함.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체로 유사함.
누 계		1.00	1.1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5) 대상물건의 시산가액

사례가격(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격형성 요인비교	면적비교	비준가격(원)
319,945,100	1.00	0.99476	1.18	$\frac{51.64}{51.26}$	378,341,007

## III.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 1.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1) 인근 유사부동산 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정보]

소재지	건물명	층/호	전유 면적(㎡)	감정평가액(원) (전유면적당(㎡) 단가)	기준시점	평가 목적
					사용승인일	
신곡리 1062-*	더모스트	6/*	51.72	358,000,000 (@6,922,000)	2024.03.13	법원경매
					2020.07	
신곡리 1062-*	더모스트	5/*	54.84	328,000,000 (@5,981,000)	2024.08.13	법원경매
					2020.07	
신곡리 1062-*	더모스트	6/*	52.00	389,000,000 (@7,481,000)	2020.12.16	시가참고 (본건)
					2020.07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유사물건의 경매통계분석

[최근 1년간 평균 낙찰가율, 출처: 부동산태인]

### ▪ 경기 김포시

지역통계		경기			김포시		
기간	용도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1년간 평균	오피스텔	71.79%	70.87%	636	61.34%	61.33%	56
6개월 평균	오피스텔	72.46%	71.09%	452	61.22%	61.81%	38

## (3) 유사부동산 실거래가수준

인근 유사 부동산 최근 실거래수준	전유면적당 @7,000,000원/㎡ 내외 위치별, 층별, 경과년수, 복층여부 등에 의해 가격수준을 달리 하고 있음.
-----------------------	--

##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 주변지역 유사부동산 가격수준, 인근 유사부동산 평가사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주거용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이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검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 감정평가액

종 별	수 량	감 정 평 가 액(원)
공동주택	1호	378,000,000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13번길 31  1)동 소 2)동 소	1062-6, 1062-7  더모스트 에이동  1062-6 1062-7	공동주택 제1종근린 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378,000,000	비준가격
						84.62		
						173.4		
						173.4		
						173.4		
						222.29		
						222.29		
						455.6		
						457.1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601호		51.64	51.64				
	1,2.소유권대지권		24.62					
			-----	24.62				
			912.7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151,200,000		
					건 물 :	226,800,000		
	<b>합 계</b>					<b>₩378,000,000.-</b>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및 각급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에 소재함.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가 소재하며,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중 6층 601호로서,  
(사용승인일:2020.07.31)  
외벽: 석재 및 치장벽돌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창호: 새시창임.

## (4) 이용상태

복층구조의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2필지 일단지 가장형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폭8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개발공사 확인요망)<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본건은 내부계단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복층이 소재하는 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였으며, 복층부분의 연면적은 전유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2-6, 1062-7더모스트 에이동 6층 601호
-----	--



#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2-6, 1062-7 더모스트 에이동 6층 601호
-----	---



# 호 별 배치도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2-6 더모스트 에이동 6층 601호







